

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3일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5. 1. 23. ~ 2025. 2. 7.
3. 공고방법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대상 : 박*은 외 29건(붙임 참고)
5. 근거법규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
6. 유의사항
 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%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.2%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됨을 안내 드립니다.
 - 나.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의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다.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 보건소 금연환경관리팀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환경관리팀(☎02-330-86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